

---

2016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에 대한 정기재무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강 원 도**  
( 감 사 관 실 )

【일련번호: 1】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국

【시행연도】 2014년 ~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제목】 세입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재단법인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재무회계규정」 제143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지방세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계약법령」 및 「강원도 재무회계규칙·강원도 물품관리조례」의 관계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와 그 밖의 세입을 수납할 때에는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금, 세입세출외현금, 기부금, 퇴직적립금 계좌에 입금(발생)된 수입금은 위원회 명의의 별도 수입금 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징수결의한 후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국)는 [별지]와 같이 2015. 1. 8.에 개설한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금 정산 잔액과 예금이자, 잡수입 등 112,364,545원을 세입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총 8개 계좌 112,626,763원을 세입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도비 보조금 계좌와 기부금 계좌는 해지하여야 하는데도 2016. 9. 13.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금계좌 3개와 기부금계좌 1개 등 총 4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등 세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처 분 요 구】**

- 국·도비 보조금, 세입세출외현금, 기부금, 퇴직적립금 계좌에 입금(발생)된 수입금은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계좌별 잔액에 대한 세입조치 미이행 현황

(단위: 원)

개설일자	계좌번호	개설목적	잔액발생 사유	세입 미조치 잔액	거래일자	세입징수결의 여부	통장해지 여부
계	8개			112,626,763			4개
소계				2,277			
'14. 1.23.	△△은행 ◆◆◆◆-◆◆◆◆- ◆◆◆◆-◆◆◆◆	재단 기본재산금	예금이자	282	'14. 6.29.	×	
				498	'14.12.28.	×	
				499	'15. 6.28.	×	
				499	'15.12.27.	×	
				499	'16. 6.26.	×	
소계				78,846			
'14. 3.10.	△△은행 ★★★★-★★★★- ★★★★-★★	'14년 도비, 국비	예금이자, △△연회비 환출	4,250	'15. 5. 8.	×	×
				74,518	'15. 6.28.	×	
				39	'15.12.27.	×	
				39	'16. 6.26.	×	
소계				3,313			
'14. 9.29.	△△은행 ●●●●-●●●●- ●●●●-●●●●	'14년 도비보조금	예금이자	3,313	'15.12.27.	×	×
소계				112,364,545			
'15. 1. 8.	△△은행 ■ ■ ■ ■-■ ■ ■ ■- ■ ■ ■ ■-■ ■ ■ ■	'15년 도비, 국비 예금이자 및 잡수입	보조금잔액	111,867,977	'15.12.31.	×	×
			예금이자	205,382	'15. 6.28.	×	
			"	227,460	'15.12.27.	×	
			"	47,726	'16. 6.26.	×	
			주유할인	3,120	'15. 2.16.	×	
			"	1,320	'15. 3.26.	×	
			"	1,520	'15. 4.13.	×	
			"	1,720	'15. 4.27.	×	
			"	1,320	'15. 6. 1.	×	
			"	1,240	'15. 7. 3.	×	
			"	1,320	'15. 7.27.	×	
			"	1,400	'15. 8. 3.	×	
			"	1,760	'15. 9.17.	×	
"	1,280	'15. 9.24.	×				
소계				7,607			
'15. 1. 8.	△△은행 ♣♣♣♣-♣♣♣♣- ♣♣♣♣-♣♣♣♣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이자	387	'15. 6.28.	×	
			"	1,769	'15.12.27.	×	
			"	5,451	'16. 6.26.	×	
소계				2,192			
'15. 6.10.	△△은행 ☆☆☆-☆☆☆☆- ☆☆☆☆-☆☆	기부금 모집	예금이자	2,192	'16. 6.26.	×	×
소계				160,959			
'16. 1.12.	△△은행 ♥♥♥♥-♥♥♥♥- ♥♥♥♥-♥♥♥♥	'16년 출연금	예금이자	158,559	'16. 6.26.	×	
			"	840	'16. 5. 2.	×	
			"	1,560	'16. 8. 1.	×	
소계				7,018			
'16. 2.11.	△△은행 ◆◆◆◆-◆◆◆◆- ◆◆◆◆-◆◆◆◆	퇴직금 적립금	예금이자	7,018	'16. 6.26.	×	

【일련번호: 2】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국

【시행연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제목】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재단법인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직원 복무규정」 제15조,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서식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12. 8월) 및 “유연근무제 실시에 따른 출·퇴근 시간 등록 철저”(강원도 ○○과-○○○호, 2013. 1. 7.)에 따르

면, 시차 출·퇴근형 유연근무제의 실시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1주일 단위도 가능)으로 하며, 소속 부서장에게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하도록 하고 있고,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장치를 보완·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 소속직원 ‘갑’은 2016. 2. 1.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출·퇴근 편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은 10:00에 출근하여 19:00에 퇴근하고 금요일은 08:00에 출근해서 17:00에 퇴근하는 것으로 한 달간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 승인을 받았고, ‘을’은 2016. 7. 4.부터 2017. 4. 5.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30에 출근하여 18:30에 퇴근하는 것으로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 승인을 받았으며, ‘병’은 2016.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월·수·목·금요일은 09:30에 출근하여 18:10에, 화요일은 09:30에 출근하여 19:50에 퇴근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유연근무자가 해당 유연근무일에 여건 상 자택에서 출장지로 직접 출장을 가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문인식기 등 출·퇴근 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출·퇴근 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국)에서는 출·퇴근 기록장치를 구비하여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아래 [표]와 같이 2016. 9. 13. 감사일 현재까지 유연근무자 출·퇴근 기록장치를 구비하지 않아 유연근무자가 유연근무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유연근무자 3명에 대해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았다.

[표]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

연도	직 급	성 명	기 간	근무제 유형	신청사유	출·퇴근 등록여부	비고
'16년	○급	갑	'16. 2. 1.~ '16. 3. 1.	시차출퇴근제	출퇴근편의 (★★↔◎◎)	미등록	출·퇴근 기록장치 없음
	◇급	을	'16. 4. 1.~ '16.12.31.	근무시간선택형	출퇴근편의 (◆◆↔◎◎)	"	
	△△△△	병	'16. 7. 4.~ '17. 4. 5.	시차출퇴근형	"	"	

**【처 분 요 구】**

- 유연근무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자의 유형별 출·퇴근 시간 등록부 및 출·퇴근 기록장치 등을 구비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국

【시행연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삭제)에 따라 설립된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 제66조의2 및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II.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과 IV.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본 기준<sup>1)</sup>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 및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 예산편성 기준 비교

자치단체 목-세목	지방공기업 목-세목	과목해소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216 행사·홍보비 -01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가.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나.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다.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지방공기업)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강원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2014년도 강원도 예산편성 기준”이라 한다)<sup>2)</sup>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014년도 강원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201-03목)는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을 편성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보상금(301-11목)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강원도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통계목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2014 ○○○○○○○○○○○ 행사지원금’등 6개 사업예산 115,000천 원을 행사운영비(201-03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면서 조직위원회가 직접 집행하거나 직접 집행이 곤란한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탁기관(단체)을 지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행사운영비(201-03목)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예산을 재교부하여 집행하였고,

‘2014 ○○○○○○○○○ ○○○○ ○○○○’등 4개 사업예산 238,760천 원을 기타보상금(301-11목)에 편성하여 집행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 상해치료비 이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데도, △△△ △△△△△△△

2) 2014. 3. 24.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2015년부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등 48개 단체와 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014 ○○○○○○○○○○○○ 관련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집행액	사업자	집행과목	집행일자	집행방법
계	592,520				
소계	115,000				
‘14 ○○○○○○○○○○○○ 행사지원금(□□□□콘테스트)	15,000	△△△△△△△△△△ △(○○○)	201-03 (행사운영비)	‘14. 9. 2.	보조금 교부
◆◆사진전	8,000	(사)◆◆◆◆◆◆◆◆ (△△△)	"	‘14. 9.23.	"
‘14 ○○○○○○○○○○○○ 학술대회	20,000	○○○○○○○○	"	‘14. 9.23. (‘14. 9.25.)	"
◆◆◆◆팀보상(●●)	7,000	▼▼▼▼▼▼▼▼ (☆☆☆)	"	‘14. 9.25.	"
◆◆◆◆팀보상(●●●, ●●●)	45,000	(주)▽▽▽▽▽▽ (□□□)	"	‘14. 9.25.	"
★★★★★★	20,000	♣♣♣♣	"	‘14. 9.29.	"
소계	238,760				
☆☆☆☆ 전시체험	15,000	●●●●●●●●●● ●(★★★)	301-11 (기타보상금)	‘14. 9.29. (‘14.10.16.)	계약
○○○영화제	13,000	(재)♠♠♠♠♠♠ (◆◆◆)	"	‘14. 9.29. (‘14.10.28.)	"
‘14 ○○○○○○○○○○○○ 민속공연체험	190,760	♣♣♣♣♣♣ 등 45개 단체	"	‘14. 9.29. ~‘14.11.14.	"
‘14 ○○○○○○○○○○○○ ○○ ○○○ 생방송	20,000	□□□□□□	"	‘14.12. 2.	"

**【처 분 요 구】**

○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국

【시행연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목】 분할계약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재단법인 강원도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재무회계규정」 제101조에 따르면, 계약사무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3호, 2014. 7. 31.)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이하인 전기 등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2013. 12. 3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sup>3)</sup>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하며, 예산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통합발주를 하여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입찰이나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4 ○○○○○○○○○○○○' 공연장 조명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제1공연장의 트러스트 임차와 조명설치 공사는 동일구조물 공사로 단일공사이므로 통합발주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한 후 계약하여야 하는데도,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공사금액을 2천만 원 이하 2건으로 분할하여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3) **동일구조물공사:** 천연재료와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게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인 경우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  
**단일공사:** 해당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표] 분할계약 현황

(단위: 원)

구분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비고
계	2건		27,900,000		
1	'14 ○○○○○○○○○○○ 제1공연장 트러스트 입차	'14. 9.23.	9,900,000	△△△△	
2	'14 ○○○○○○○○○○○ 제1공연장 조명설치	'14. 8. 1.	18,000,000	“	

**【처 분 요 구】**

- 계약사무 처리 시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동일업체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분할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지방계약법」 및 관  
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